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3. 2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2. 18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 2. 22
-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10. 3. 2)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 용 근 세무2과장

### 가. 개정이유

동 조례안은 2010년 2월1일 법률 제9785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서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 체계를 조정·개편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 개정 내용

- (1) 안 제3조에서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과세로서의 성격이 유사한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과세로서의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함으로써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외에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2개의 세목이 추가 신설

- (2) 안 제21조3(과세기준일 및 납기)에서는 2005.12.31 법률 제 7843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
- (3) 안 제3절에는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세목아래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안 제28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율, 안 제30조에서는 신고의무사항을 신설
- (4) 안 제4절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는 세목아래 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주민세 재산분”과 동일하게 안 제31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안 제32조에서는 세율, 안 제33조에서는 신고의무사항을 신설하되 안 제33조 2항에서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주민세재산분”에 관한 안 제3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음
- (5) 부칙 안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고 제3조에서는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중 제12조, 제15조, 제1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조제2항제37호의 세목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도록 규정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 명금길)

○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추가하는 등 우리 구 구세의 세목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자치구세 조례 개정 표준안」의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일부 조항과 규정의 정비는 물론 같은 법 제9조의3(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숙지하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리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세수증대와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